

Yonsei Medical Journal 연구윤리규정

제정 2008. 1. 1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Yonsei Medical Journal (이하 “YMJ”라 한다)에 연구결과를 게재하고자 논문 등을 제출하거나, 이를 심사·평가·출판할 때, 연구출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윤리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 대상) 이 규정은 YMJ에 제출된 논문, 기고문, 편지, 기타 관련 자료 및 제반 문건을 대상으로 한다.

제 2 장 용어 정의

제 3 조 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연구윤리: 연구 수행에서 연구진실성과 관련된 윤리로 포괄적으로 출판윤리도 포함되며, 날조 및 변조와 표절 등에 관한 사항, 생명윤리와 동의서에 관한 사항, 자료의 분석과 표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
2. 출판윤리: 연구 결과물의 출판진실성과 관련된 윤리로 저자됨, 이해관계, 중복출판, 심사와 편집 과정에서의 윤리사항 등을 포함
3. 날조(fabrication): 존재하지 않는 기록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
4. 변조(falsification): 연구를 시행하여 얻은 자료를 선택적으로 변경하거나 자료의 통계 분석에서 불확실한 것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
5. 표절(plagiarism): 타인의 아이디어, 방법, 결과물,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없이 도용하는 행위
6. 이중(중복)게재(duplicate or redundant or overlapping publication):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 부분이 겹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로 자기표절, 분할출간,

덧붙이기 출간도 포함되며, 이차게재와는 다른 개념임

7. 덧붙이기출간(imalas publication): 출판된 논문에 증례 수를 늘려 같은 결론의 논문으로 출간하는 경우로 이중게재의 일종으로 간주함.

8. 분할출간(salami publication):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고 최소 출판 단위로 나누어 두 편 이상으로 논문을 출간하는 경우로 이중게재의 일종으로 간주함

9. 자기표절(self plagiarism): 이미 출판된 자기 논문의 내용 일부, 표, 그림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로 이중게재의 일종으로 간주함

10. 이차게재(secondary publication): 비슷한 연구 결과물을 서로 다른 출판물에 이중게재를 하는 것을 말하며, 이중게재와 달리 ‘생의학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’에 기술된 6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

11. 이해관계(conflict of interest): 논문의 출판과 관련된 사람 또는 기관이 특정 논문에 재정적인 이익이 걸려 있거나 사적인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경우

12. 저자자격(authorship): 출판하는 논문의 연구에 실제적인 지적 공헌을 한 사람

13. 논문철회(withdrawal): 저자가 제출한 논문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자진하여 취소하는 경우로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어 발간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음

14. 논문취소(retraction): 출판된 논문에서 과학적인 부정 행위나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어 향후 연구 자료로 활용되지 않도록 논문을 관련 데이터에서 삭제하고 연구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함

제 3 장 연구윤리

제 4 조 (날조, 변조, 표절) 연구자는 자신이 YMJ에 제출한 연구 논문, 기고문, 편지 등의 문헌들이 날조, 변조, 표절 등과 같은 연구윤리에 위반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임상시험심사등) ① 인간과 관계된 모든 연구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독립적인 임상시험심사위원회(IRB)에서 연구계획서를 심의 받은 후 진행하여야

하며 이를 제출된 논문에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동물 실험과 관련된 모든 연구는 IRB 심사를 받았거나 동물실험에 관련된 국내, 국외의 실험지침을 따랐는지 원고에 기술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출판윤리

제 6 조 (저자자격) ① 편집위원장은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에 대한 의혹이 있거나, 부정에 관한 제보가 들어왔을 때, 나열한 저자들이 연구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요구할 수 있다.

② 학술지 게재를 허가한 후 ‘저자추가’ 또는 ‘저자삭제’를 요구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저자가 논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밝히는 문건과 기존 저자들의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 7 조 (이해관계) 연구자는 해당 연구에 영향을 끼친 재정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사적으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.

제 8 조 (중복출판과 오류) ① 연구자는 논문을 제출할 때 이 논문이 다른 잡지에 실리지 않았고 논문이 채택된 후에도 다른 잡지에 제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야 한다.

② 연구자는 이차게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이를 먼저 밝혀야 한다. 이차게재 이외의 이중게재는 허용되지 않는다.

③ 허용되지 않는 이중게재에는 ‘덧붙이기 출간’, ‘자기표절’, ‘분할출간’이 포함된다.

④ 연구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내용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, 심각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논문이 게재되기 전에 논문 철회를 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심사자윤리

제 9 조 (심사자윤리) ① 심사자는 편집위원과 전문 심사자(peer reviewer)를 모두 포함한다.

②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논문 연구자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.

③ 편집위원은 독자, 저자 또는 전문 심사자에게 보내는 편지나 전자 우편을 최대한 정중하고, 간략하고, 명확하게 써야 하며, 게재 거부를 통지할 때도 그것이 저자 개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원고가 본 학술지 게재에 적합한지 여

부를 평가한 결과라는 점을 정중하게 지적하고 저자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심사자는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심사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안에 따라 주의, 경고, 심사 및 편집업무 배제 또는 일정기간 본 학회지 투고 금지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.

제 10 조 (이해관계) ① 심사자는 심사 의뢰 받은 논문을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,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여 평가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.

② 심사자의 논문 심사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는 재정적인 관계, 이익 경쟁과 같은 사적인 관계, 연구 경쟁과 지적인 관심사가 있으며 심사전에 이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.

③ 편집위원이나 전문 심사자 중의 누구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연루된 논문이 있는 경우 판정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.

제 11 조 (심사의뢰) 전문 심사자에게 원고를 의뢰할 때 전문 심사자가 해당 원고 또는 저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.

제 12 조 (비밀서약) ① 심사자는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. 논문 평가를 위해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.

② 편집위원은 윤리위반에 대한 신고자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.

③ 윤리 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 이외에 연구자 신분과 결정 과정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.

제 6 장 윤리위반에 대한 처리

제 13 조 (편집위원회 소집과 심의) ① 연구윤리 또는 출판윤리 위반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의심되는 경우,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있으므로 편집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해당 연구기관에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출판윤리가 의심스러운 경우,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윤리위반 여부를 판단하

여야 한다.

제 14 조 (의결) ①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1/2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윤리 위반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위원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 15 조 (소명) ① 윤리위반 사항에 대한 결정에 앞서 편집위원회는 연구자로부터 최소한 한차례 이상의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는 ‘비공개 참석 소명’ 또는 문서로 할 수 있다.

② '비공개 참석 소명'시 편집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의 신분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.

③ 소명의 기회를 거부하는 경우, 한차례 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후로도 거부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위반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.

제 16 조 (자료보관) 편집위원회는 결정 후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회의록은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
제 17 조 (조치, 징계) 편집위원회는 연구자의 부정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수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.

- ① 교육적 내용을 담은 서한 발송
- ② 소속 기관장이나 연구비 지원기관에 공식 서한 발송
- ③ YMJ에 중복출판이나 부정 행위에 대한 공지의 글 발표
- ④ YMJ에 부정행위 전모에 대한 편집위원장의 글 발표
- ⑤ 부정행위 책임이 있는 개인, 단위 및 기관에 대해 일정기간 투고금지
- ⑥ 해당 논문의 공식적 철회 혹은 취소
- ⑦ 타 학술지 편집인 및 색인기관에 통보
- ⑧ 다른 조사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에 보고

제 18 조 (기타)
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, 결정에 따른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